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이해식 · 신정훈
차지호 · 김준혁 · 이재정
윤종균 · 허 영 · 윤건영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. 이에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,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, 양육,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게 함. 또한,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,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, 과세정보, 금융정보,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.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,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(안 제12조의3).

나.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,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(안 제12조의4).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(공공서비스 맞춤 안내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(이하 “자격요건”이라 한다)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(이하 “공공서비스 맞춤 안내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·관리·활용,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,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“공공서비스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이를 신청한 자(이하 “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”라 한다)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
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
 3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
 4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정보
 5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
 6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정보
 7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
 8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정보
 9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
 10. 그 밖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
 2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
 3.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의 통지, 신청 철회 방법,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“제공 대상자”를 “맞춤 안내 대상자”로, “등록시스템”을 “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3(등록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·활용하기 위한 시스템(이하 “등록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·국세·지방세·금융·부동산·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.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	제12조의3(공공서비스 맞춤 안내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(이하 “자격요건”이라 한다)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(이하 “공공서비스 맞춤 안내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·관리·활용,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,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(이하 “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이를 신청한 자(이하 “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”라 한다)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

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

3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

4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정보

5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

6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정보

7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

8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정보

9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

10. 그 밖에 공공서비스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맞춤형 안내 대상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

2.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

3.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

제12조의4(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[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및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.

는 사실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의 통지, 신청 철회 방법,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4(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) ① -----

-----맞춤 안내 대상자-----

-----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-----
-----.

<u><신 설></u> <u>② · ③</u> (생 략)	<u>②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 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공서 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12조 의3제3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.</u> <u>③ · 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
---	--